

부 산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노1905 강제추행

피 고 인 안병길 (400000-00000000), 유00

주거 부0 00 000 000000 00 (000)

등록기준지 부0 00 0000 0000 00-00

항 소 인 검사

검 사 신00(기소), 김00(공판)

변 호 인 법000(00) 00

담당변호사 신00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8고단3661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2. 13.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원심이 판시한 사정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17. 4. 초순경 추행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실제로 닿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당초 기자와 인터뷰할 때에는 얼추 닿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자신의 가슴을 눌렀고 피해자가 손으로 가슴을 막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당초 위 추행 이후 피해자는 속으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무엇이 묻어서 떼어주려고 그랬나?’하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에게 자신을 찌른 이유를 묻자 피고인이 “무엇이 묻은 것 같아 떼어주려고”라고 답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사실이 보다 구체화되고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이나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다.

② 피고인이 여러 명이 앉아 있는 식사자리에서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만일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사실이 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뭐가 묻어서 떼어주려고 한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면, 식사자리에 동석한 이들이 이를 충분히 기억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식사자리에 동석한 000, 000, 000는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참고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검사는 000의 진술이 000, 000의 진술과 상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000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샷대질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지 않았고,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려고 했다면 앉은 자리에서 손을 뻗더라도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거리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추행여부에 관한 000의 진술은 000, 000의 진술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③ 2017. 5. 12.자 추행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는 폭 60cm에 불과한 좁은 계단으로 피해자가 고령의 노인임을 고려하더라도 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앞질러 가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000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식당 계단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추행사실이 발생하거나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을 목격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증인은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

④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구의원 공천을 받기 위하여 당적을 변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오랜 기간 당원 생활을 하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하여 물의를 일으킬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남재현 _____

 판사 박재인 _____

 판사 이유진 _____